

# 부천시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2월 14일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자치과장 박한권)

### 제안이유

- 200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부천시 장학금의 지급정의와 장학생의 자격 중 중학생을 제외함.  
(안 제2조제2호 내지 제3조제1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#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0호
의결 년월일	2004.12.23 (제116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2. 8.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# □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- 200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됨에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